

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	2009. 1. 12	조례 제 980호
일부개정	2011. 12. 15	조례 제1204호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10. 16	조례 제1870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23. 6. 30	조례 제242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6. 30>

1. “지역건설산업”이라 함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기본법”이라 한다)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관할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, 건설 용역업, 건설 장비업 등을 말한다.
2. “지역건설산업체”(이하 “지역업체”라 한다)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, 자재생산·유통업체, 용역업체, 장비업체 등을 말한다.
3. “지역건설노동자”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, 교육,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사업 인·허가 시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) 지역건설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이행상황 점검)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
2.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
3. 지역의 민간사업 인·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
4. 지역 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) ①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.

1.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·단체 또는 업체
2.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공정이 뚜렷한 개인·단체 또는 업체

제6조의2(분할발주 등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30>

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
2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

[본조신설 2011. 12. 15]

제6조의3(실적공사비 적용 제한)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
2.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·신공법·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11. 12. 15]

제6조의4(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.

1.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100분의 49 이상
2.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100분의 60 이상
3.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

② 시장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계획된 공사의 품질 및 공정률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,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 6. 30]

제7조(지원)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제품 홍보,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시 지원
2. 우수기업 및 우수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홍보
3. 산·학·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 사업비 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제8조(위원회)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
2.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
3.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
4.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
5. 건설 산업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
6. 우수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10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7. 10. 2, 2018. 10. 16, 2023. 6. 30>

1.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2.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
3. 시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
4. 건설 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
5. 건설 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1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장이 시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지정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건설기술 지원) ①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공법 및 기술축진을 위하여 시 관내 소재 또는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「용인시 지역건설사업 기술지원센터」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.

1. 각종 건설공사의 신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
2.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
3.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

③ 지역 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.

제16조(기술개발 지원)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칙 <2011. 12. 15 조례 제120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8 까지 생략

⑥9 「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⑦0 부터 ⑧3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10. 16 조례 제1870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⑪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부시장”을 “제2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⑫ 생략

부칙 <2023. 6. 30 조례 제242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